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에게 단기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3)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시설 개요

- 1) 시 설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2) 위 치 : 원평동 964-329번지

- 3)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342.86㎡
- 4) 주요시설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화장실 등
- 5) 정 원 : 10명

라. 위탁사무

- 1) 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2) 장애인 보호,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 3) 이용자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마. 위탁기간 : 5년(위탁개시일로부터) * 2027. 2. ~ 2032. 1.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730,000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비고
730,000	596,000	72,000	62,000	

사.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자. 부서의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새로 건립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와 일상생활 지원, 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 고도의 전문성과 세심한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로,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인프라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신규로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최초의 민간위탁 사업인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소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중증도, 연령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관내에 돌봄이 시급한 장애인 가정이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수탁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이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